

2019년 기출문제

2.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1) 아래의 조건을 참고하여 A, B보험사의 지급보험금을 산출하시오. (판단근거를 제시할 것)
(14점)

㉠ 계약사항

보험사	보험종목	계약자 및 피보험자	보험기간	가입금액 (담보내용)
A	장기상해보험	김안심	2015.05.11. ~ 2030.05.11.	상해사망 1억원
B	장기종합보험	(女, 57세)	2016.07.15. ~ 2026.07.15	상해사망 1억원

※ 정상 유지 계약임 (계약성립 과정상의 보험회사 측 귀책사유 없음)

㉡ 청구사항

- 피보험자는 2019.07.16. 23시경 본인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甲식당 주방에서 쓰러져 사망한 채로 발견되어, 사망수익자가 2019.07.30. A, B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함

㉢ 직업 관련 사항

- 피보험자는 A, B보험사에 보험 가입 시 직업을 전업주부로 고지함
- 전업주부였던 피보험자는 2016.01.01.부터 甲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사고 일까지 계속 근무함
- A보험사에 직업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음
- 보험요율 : 1급 요율(0.1%), 2급 요율(0.2%), 3급 요율(0.3%)
- 직업급수 : 전업주부(1급), 식당종업원(2급), 이륜차배달원(3급)

㉣ 경찰수사 결과

- 피보험자는 사망하기 전까지 평소 지병 및 근황에 특이점이 없었고, CCTV확인결과 2019.07.16. 16시경 음식점 주방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부검결과 두부 손상으로 인한 외인사로 확인되어 자살 및 타살 혐의점이 없어 내사 종결됨

A계약

1. 보장담보 확인 및 보험금 지급

- 1)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의무 불이행건
 - 2) 보험사가 계약 후 알릴의무 불이행건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 처리하여야 함.
 - 3) 발생한 보험사고는 변경된 직업 및 직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 있어 비례보상
 - 4) 비례보상 = 보험금 × 변경전 요율(예정위험요율) / 변경후 요율(예정위험요율)
 - 5) 비례보상(지급보험금) 5천만원 = 1억 × 0.1(전업주부1급 요율 0.1) / 0.2(식당종업원 2급 요율 0.2)
- ☞ 아래 약관근거 내용은 시간이 가능할 때 기재
이미 보장담보 확인에서 약관상 근거가 기재되어 있음

2. 약관근거

(1) 상해보험으로 직업변경시 통지의무 발생 건

- 1) 통지의무는 계약자와 피보험자
- 2) 통지 수령권은 보험자이며, 보험모집인은 통지의 수령권이 없기 때문에 보험모집인에게 위험변경 사실을 알린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 3) 직업변경 통지의무 불이행으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등의 변경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아니한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변경 전 요율'에 대한 '변경 후 요율'의 비율에 따라 비례보상됨을 통보하고 '변경 전 요율'에 대한 '변경 후 요율'에 따라 비례 보상한다.

4) '변경 전 요율'보다 '변경 후 요율'이 낮은 경우에는 비례보상 없이 본래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한다.

5) 비례보상 = 보험금 × 변경전 요율(예정위험요율) / 변경후요율(예정위험요율)

6) 인과관계

보험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와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 등과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비례보상 없이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한다.

B계약

1. 보장담보 확인 및 보험금 지급

1) 장기 종합보험은 직업고지의무 위반계약

2) 가입후 보험사고 없이 2년 경과하여 계약해지권 제한사항임.

3) 가입금액 1억지급

☞ 아래 약관근거 내용은 시간이 가능할 때 기재

이미 보장담보 확인에서 약관상 근거가 기재되어 있음

2. 약관근거

(1) 고지의무 위반(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

1) 상법상 고지의무와 동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2)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

보험회사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험의 인수여부 및 보험료, 보험계약 내용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식되는 사항

(2)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1) 계약의 해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계약해지권의 제한

①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했음을 때에는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②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 또는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이(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 경과하였을 때

③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났을 때(상법 제 651조 원용)

④ 진단계약의 경우,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을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없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보험설계사의 고의 또는 과실

보험설계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에는 계약해지권이 제한된다.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계약을 해지 하였을 때에는 제 34조 제 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4) 해지 서면안내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이 중요

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준다.

5) 입증책임(개정 2018. 11. 6일)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

6) 타사가입사항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지급 거절할 수 없다.

(2) 「상해보험의 계약 후 알릴의무 (2018.03.02.개정)」 조항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변경내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회사에 알려야 할 피보험자의 변경사항”을 모두 쓰시오.

(6점)

☞ 약관의 2018.3.2.일 개정 조항을 묻고 있습니다. 약관은 최대한 정확하게 약관문구로 기재하는 것이 정답에 가깝습니다.

1.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2.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3. 현재의 직업을 그만 둔 경우
4.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5.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6.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 그 사실

☞ 시간에 여유가 있을 때

7. 직업

- 1)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 2)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말함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8. 직무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할 맡은 일